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정 2020.06.25.>, <최종개정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 통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④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이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해 인정한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진행하는 경우, 평가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오류 및 첨부파일 용량초과 등 불가피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제5조(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① 모집공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분야별(토목·건축)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1.12.22.>

②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제출한 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이 30억원 미만인 용역은 90점,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지정한다. 기초가격은 건설사업자가 지정신청시 제출한 안전점검비용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초가격 1억원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1억원 미만은 종합평점(가산점 포

함)이 높은 자로 지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또는 종합평점이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④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제6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1. 모집공고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모집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06.25.)

이 기준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9.04.)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2.)

이 기준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세 부 평 가 기 준

가. 공통사항

1) 공통사항

- 가)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다)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주자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건설용역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를 말하며,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한다.
- 라) 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와 “그 외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철도분야(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전철)의 교량·터널·건축물의 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 (2) 그 외의 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해당분야를 제외한 교량·터널·건축물의 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 (3) 단, 당해공고의 분야(토목·건축)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마) 참여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참여업체 소속으로서 지정공고시 제시한 자격 및 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참여기술인이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2) 참여기술인의 등급·실적은 해당항목의 배점을 각 참여기술인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한다.
 - (3) 참여기술인의 실적 등의 기간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

-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등급의 평가는 이 기준의 [별표 2](사업수행능력 분야별 등급 세부평가표)를 참고한다.로 해당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그 외의 분야”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건축물 분야는 “해당분야” 실적만 100% 반영하되, “그 외의 분야” 실적은 50%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준공여부)에 따른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 준공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참여기술진 명단](#),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참여기술진 명단](#),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3)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4)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그 외의 분야”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건축물 분야는 “해당분야” 실적만 100% 반영하되, “그 외의 분야” 실적은 50%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위 나)의 (2)항 내용과 같다.

(3)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의 평가

(1)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 (4) 업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설도

- (1)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사용 실적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3)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3) 실적이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4) 실적은 최초지정자(최초출원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실적/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단,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2)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업무중첩도

- (1) 공단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하며, 세부평가방법은 이 기준 [별표 3]에 따른다.(최대 8점)
- (2) 지정공고시 등록업체 및 용역발주 건수를 감안하여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정을 제한하는 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

6)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1) 신규 건설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3) 경력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7) 감점

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별점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별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별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 별점에 따라 감점한다)
- (2) 참여기술인의 별점은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

- (1)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인 및 그 당시 참여기술인이 소속된 업체에 대한 참여기술인 2점, 참여업체 3점을 감점한다.
- (2)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다)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감점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감점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서 정기적인 점검·불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기준 [별표 3]을 참고하며,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점검결과 지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등 참여기술인 현장 무단이탈, 작업자 안전교육 미시행, 교체 및 퇴직 등에 따른 참여기술인 변경사항 미보고, 사전·임의작업 등으로 적발 시 적발횟수에 따라 감점한다.(평가반영은 점검결과 지적 공문 시행기준으로 익년도 1년간 적용하며, 최대 1점한도내에서 감점)

[별표 2] (개정 2021.12.22.)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등급 세부평가표

구 분		자 격 및 등 급		점수비율
사업책임기술인 (-)		교량 및 터널분야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건축분야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분야별 책임 기술인 (8)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고급기술인	100%
			중급기술인	80%
		그 외의 분야	고급기술인	100%
			중급기술인	80%
	건축	건축분야	고급기술인	100%
			중급기술인	80%
분야별 참여 기술인 (5)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중급기술인	100%
			초급기술인	80%
		그 외의 분야	중급기술인	100%
			초급기술인	80%
	건축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100%
			초급기술인	80%

* 그 외의 분야: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 토목시공, 안전관리(건설안전자격기술자) 각 분야를 총칭함

*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사항	배점 범위	평가 방법
가. 참여기술인			
(1) 사업 책임기술인	- 등급 - 실적	[18] (-) (18)	○ 절대평가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최근 7년간 용역건수(9점) 및 용역금액(9점)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실적	[18] (8) (10)	○ 절대평가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최근 7년간 용역건수(5점) 및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3) 참여기술인	- 등급 - 실적	[9] (5) (4)	○ 절대평가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최근 7년간 용역건수(4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 -금액	(12) (13)	○ 절대평가 - 최근 5년간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최근 5년간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 업무(영업)정지 - 재정상태건실도	(6) (6)	○ 절대평가 -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영업)정지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2) (8)	○ 절대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 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 업무중첩도	8 (건당)	○ 절대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바. 가점 및 감점			
(1) 가점		(0.3)	○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2) 감점		(-5)	-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등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	-----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45]	(1) 사업 책임기술인	(18)	- 사업 책임기술인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	(-)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교량 및 터널</td> <td style="width: 65%;">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 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td> <td style="width: 20%;">필수</td> </tr> <tr> <td>건축물</td> <td>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 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td> <td>필수</td> </tr> </table> <p>* 사업 책임기술인의 등급은 반드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의거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p>	교량 및 터널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 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건축물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 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교량 및 터널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 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건축물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 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 실적(건수) - 실적(금액)	(9) (9)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 건 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7건이상</td> <td>7건미만 6.3건이상</td> <td>6.3건미만 5.6건이상</td> <td>5.6건미만 4.9건이상</td> <td>4.9건미만</td> </tr> <tr> <td>9.0</td> <td>8.1</td> <td>7.2</td> <td>6.3</td> <td>5.4</td> </tr> </table> •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5억원이상</td> <td>5억원미만 4.5억원이상</td> <td>4.5억원미만 4억원이상</td> <td>4억원미만 3.5억원이상</td> <td>3.5억원미만</td> </tr> <tr> <td>9.0</td> <td>8.1</td> <td>7.2</td> <td>6.3</td> <td>5.4</td> </tr> </table> <p>*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p>	7건이상	7건미만 6.3건이상	6.3건미만 5.6건이상	5.6건미만 4.9건이상	4.9건미만	9.0	8.1	7.2	6.3	5.4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9.0	8.1	7.2	6.3	5.4
7건이상	7건미만 6.3건이상	6.3건미만 5.6건이상	5.6건미만 4.9건이상	4.9건미만																		
9.0	8.1	7.2	6.3	5.4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9.0	8.1	7.2	6.3	5.4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철도, 그외)을 대상으로 평가 * 건축물 분야는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	(8)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교량 및 터널</td> <td rowspan="2">철도</td> <td>고급기술인</td> <td>8.0</td> </tr> <tr> <td>중급기술인</td> <td>6.4</td> </tr> <tr> <td rowspan="2"></td> <td rowspan="2">그 외</td> <td>고급기술인</td> <td>8.0</td> </tr> <tr> <td>중급기술인</td> <td>6.4</td> </tr> <tr> <td rowspan="2">건축</td> <td rowspan="2">건축물</td> <td>고급기술인</td> <td>8.0</td> </tr> <tr> <td>중급기술인</td> <td>6.4</td> </tr> </table>	교량 및 터널	철도	고급기술인	8.0	중급기술인	6.4		그 외	고급기술인	8.0	중급기술인	6.4	건축	건축물	고급기술인	8.0	중급기술인	6.4	
	교량 및 터널	철도	고급기술인			8.0																
중급기술인			6.4																			
	그 외	고급기술인	8.0																			
		중급기술인	6.4																			
건축	건축물	고급기술인	8.0																			
		중급기술인	6.4																			
- 실적(건수)	(5)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 실적(금액)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수 <table border="1"> <tr> <td>6건이상</td> <td>6건미만 5.4건이상</td> <td>5.4건미만 4.8건이상</td> <td>4.8건미만 4.2건이상</td> <td>4.2건미만</td> </tr> <tr>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 금 액 <table border="1"> <tr> <td>4억원이상</td> <td>4억원미만 3.6억원이상</td> <td>3.6억원미만 3.2억원이상</td> <td>3.2억원미만 2.8억원이상</td> <td>2.8억원이상</td> </tr> <tr>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p>*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p>	6건이상	6건미만 5.4건이상	5.4건미만 4.8건이상	4.8건미만 4.2건이상	4.2건미만	5.0	4.5	4.0	3.5	3.0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6억원이상	3.6억원미만 3.2억원이상	3.2억원미만 2.8억원이상	2.8억원이상	5.0	4.5	4.0	3.5	3.0
6건이상	6건미만 5.4건이상	5.4건미만 4.8건이상	4.8건미만 4.2건이상	4.2건미만																			
5.0	4.5	4.0	3.5	3.0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6억원이상	3.6억원미만 3.2억원이상	3.2억원미만 2.8억원이상	2.8억원이상																			
5.0	4.5	4.0	3.5	3.0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철도, 그외)을 대상으로 평가 * 건축물 분야는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교 량 및 터 널</td> <td rowspan="2">철 도</td> <td>중급기술인</td> <td>5.0</td> </tr> <tr> <td>초급기술인</td> <td>4.0</td> </tr> <tr> <td rowspan="2"></td> <td rowspan="2">그 외</td> <td>중급기술인</td> <td>5.0</td> </tr> <tr> <td>초급기술인</td> <td>4.0</td> </tr> <tr> <td rowspan="2">건 축</td> <td rowspan="2">건축물</td> <td>중급기술인</td> <td>5.0</td> </tr> <tr> <td>초급기술인</td> <td>4.0</td> </tr> </table>	교 량 및 터 널	철 도	중급기술인	5.0	초급기술인	4.0		그 외	중급기술인	5.0	초급기술인	4.0	건 축	건축물	중급기술인	5.0	초급기술인	4.0		
교 량 및 터 널	철 도	중급기술인	5.0																				
		초급기술인	4.0																				
	그 외	중급기술인	5.0																				
		초급기술인	4.0																				
건 축	건축물	중급기술인	5.0																				
		초급기술인	4.0																				
	- 실적(건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 건 수 <table border="1"> <tr> <td>5건이상</td> <td>5건미만 4.5건이상</td> <td>4.5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 3.5건이상</td> <td>3.5건미만</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p>*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p>	5건이상	5건미만 4.5건이상	4.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5건이상	3.5건미만	4.0	3.6	3.2	2.8	2.4										
5건이상	5건미만 4.5건이상	4.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5건이상	3.5건미만																			
4.0	3.6	3.2	2.8	2.4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실적(금액)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 실적(건수)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25]			<table border="1"> <tr> <td>10건이상</td> <td>10건미만 8건이상</td> <td>8건미만 6건이상</td> <td>6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td> </tr> <tr> <td>12.0</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p>• 실적(금액)</p> <table border="1"> <tr> <td>10억원이상</td> <td>10억원미만 8억원이상</td> <td>8억원미만 6억원이상</td> <td>6억원미만 4억원이상</td> <td>4억원미만</td> </tr> <tr> <td>13.0</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r> </table> <p>*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p>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0.8	9.6	8.4	7.2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13.0	11.7	10.4	9.1	7.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0.8	9.6	8.4	7.2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13.0	11.7	10.4	9.1	7.8																						
다. 신용도 [12]	- 영업(업무)정지	(6)	<p>-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p> <p>-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p>																							
	- 재정상태 건설도	(6)	<p>-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6.0 점</td> <td>5.4 점</td> <td>4.8 점</td> <td>0 점</td> </tr> </table> <p>*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p>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6.0 점	5.4 점	4.8 점	0 점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6.0 점	5.4 점	4.8 점	0 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사용 실적	(2)	<p>-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p> <p>- 건설신기술 : 1.0점/건당</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중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r> <td>실적건수 (건수)</td> <td>50이상</td> <td>5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 (억원)</td> <td>70이상</td> <td>7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5이상</td> <td>5미만 1이상</td> <td>1미만 0.5이상</td> </tr> </table> <p>- 특허 : 0.6점/건당</p>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수)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수)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구분</td> <td colspan="5">가중치</td> </tr> <tr>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r> <td>실적건수 (건수)</td> <td>50이상</td> <td>5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 (억원)</td> <td>70이상</td> <td>7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5이상</td> <td>5미만 1이상</td> <td>1미만 0.5이상</td> </tr> </table> <p>* 위 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 가중치는 건수 및 금액 중 큰 값을 적용</p>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수)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수)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투자실적	(8)	<p>- (산출기준)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p> <table border="1"> <tr> <td>1.50%이상</td> <td>1.50%미만 1.25%이상</td> <td>1.25%미만 1.00%이상</td> <td>1.00%미만 0.75%이상</td> <td>0.75%미만</td> </tr> <tr>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p>*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기준</p>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8.0	7.2	6.4	5.6	4.8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8.0	7.2	6.4	5.6	4.8																						
마. 업무중첩도 [8]	- 업무중첩도	(건당)	<p>- 공단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 단,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 적용</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억원 이상 안전점검 용역(건당)</td> </tr> <tr> <td>참여업체</td> <td>3점 감점</td> </tr> <tr> <td>사업 책임기술인</td> <td>1점 감점</td> </tr> <tr> <td>분야별 책임기술인</td> <td>1점 감점</td> </tr> </table>	구분	1억원 이상 안전점검 용역(건당)	참여업체	3점 감점	사업 책임기술인	1점 감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점 감점															
구분	1억원 이상 안전점검 용역(건당)																									
참여업체	3점 감점																									
사업 책임기술인	1점 감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점 감점																									
바. 가점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p>-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p> <table border="1"> <tr> <td>3% 이상</td> <td>2% 이상</td> <td>1% 이상</td> </tr> <tr> <td>0.3</td> <td>0.2</td> <td>0.1</td> </tr> </table>	3% 이상	2% 이상	1% 이상	0.3	0.2	0.1																	
3% 이상	2% 이상	1% 이상																								
0.3	0.2	0.1																								
바. 감점 [최대 -5]	-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5)	<p>- 다음에 해당하는 벌점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tr> <td>누계 평균 벌점</td> <td>1점 ~ 2점</td> <td>2점 ~ 5점</td> <td>5점 ~ 10점</td> <td>10점 ~ 15점</td> <td>15점 ~ 20점</td> <td>20점 이상</td> </tr> <tr> <td>감점</td> <td>0.2</td> <td>0.5</td> <td>1</td> <td>2</td> <td>3</td> <td>5</td> </tr> </table>	누계 평균 벌점	1점 ~ 2점	2점 ~ 5점	5점 ~ 10점	10점 ~ 15점	15점 ~ 20점	20점 이상	감점	0.2	0.5	1	2	3	5									
누계 평균 벌점	1점 ~ 2점	2점 ~ 5점	5점 ~ 10점	10점 ~ 15점	15점 ~ 20점	20점 이상																				
감점	0.2	0.5	1	2	3	5																				
바. 감점 [최대 -5]	-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	(-5)	<p>-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항</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건당</td> </tr> <tr> <td>참여업체</td> <td>3점 감점</td> </tr> <tr> <td>참여기술인</td> <td>2점 감점</td> </tr> </table> <p>*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기준</p>	구분	건당	참여업체	3점 감점	참여기술인	2점 감점																	
구분	건당																									
참여업체	3점 감점																									
참여기술인	2점 감점																									
	- 참여업체 및	(-1)	-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 결과 지적된 업체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기술인 감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					
			지적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감점	0.2	0.4	0.6	0.8	1.0
* 점검결과 지적 공문 시행기준으로 익년도 1년간 적용								

* 1억원 미만(PQ미시행)은 지정공고시 업무중첩도 별도 안내